

제주지방법원 2019. 10. 16 선고 2018나1404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19. 10. 16 선고 2018나14045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8. 11. 13 선고 2018가단5644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

원고보조참가인 H

피고,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

변론 종결 2019. 8. 28

판결선 고 2019. 10. 16

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. 11. 13. 선고 2018가단564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, 보조참가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묘지 1,53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3. 11. 19. 접수 제54097호 및 같은 법원 2010.12. 24. 접수 제8079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3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.

『한편, 원고는 1990. 9. 10. 당시 북제주군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그 매수를 조건으로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·교부하여 준 것인데, 이후 북제주군이나 피고가 매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건불성취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다.

나아가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: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.

』

○ 제4쪽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.

『3) 한편,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므로(대법원 1977.6. 7. 선고 76다3010 판결, 2004. 9. 24. 선고 2004다27273판결 등 참조),피고 앞으로의 등기는 적법한 증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,달리 그 증여에 조건이부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설령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작성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C 및 그 손자인 D이 사망하였고 원고이외에 다른 상속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는 이상, 이사건 토지의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,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이유 없다(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보기도 어렵다).

』

○ 제4쪽 14행의 "3)"을 "4)"로 고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강재원판사 정승진판사 이선희